

□ 편의지원 제공대상

-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 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편의지원 신청방법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희망여부 기재
-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, 편의지원 신청서(참고4)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신청 메일주소 추후 안내 예정)
- 서류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, 편의지원 희망조사 실시 예정
 -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반드시 기재된 장애유형 및 정도, 편의지원 내용으로 작성
 -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참고1, 2) 외 장애 및 요청사항은 지원하지 않음
 -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편의지원 제공
 - 상이등급자인 경우,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

[참고1]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(필기전형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별도시험실 배정 	장애인증명서	
		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	장애인증명서	구 1~3급
	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장애인증명서	구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장애인증명서	구 1~6급
뇌병변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 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	장애인증명서	구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의사진단서 (원본)	구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	장애인증명서	
시각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(축소)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 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원본)	구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구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	장애인증명서	구 3급 1,2호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 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원본)	구 4급 2호	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	
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	구 4,5급 1호
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구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	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구 5급 2호, 구 6급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•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구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/ 일시적 신체장애	•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(원본)	
	임산부	•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높낮이 조절 책상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(원본)	

- ※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※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- ※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- ※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(소견서)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

[참고2]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(면접전형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공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
뇌병변 장애	공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	
	장애정도가 심한사람 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
시각장애	장애 정도가 심한 자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	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 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	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의사전달 보조요원 · 필담면접 ·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
	임산부 · 전담도우미 지원 높낮이 조절 책상	

※ 면접전형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

[참고3] 증빙서류 유의사항

-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-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불인정
 - 단, 임신부 증빙서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
- 발급일자 :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5.2.26.)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 - 기타 장애, 임신부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(원본)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)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- 지원서 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기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 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

편의지원 신청서

성 명		지원분야	
수험번호		연락처	
장애유형 및 정도			
편의지원 내용			

- ※ 장애유형 및 정도와 편의지원 내용은 [참고1] 또는 [참고2]에 기재
- ※ 증빙서류 검토 후, 편의제공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

본인은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며,
추후 허위기재로 확인될 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지원자 : (인)